

“우리는 永遠한 警察人” 이택순 경찰청장 警友會 방문



구홍일 회장을 비롯한 경우 회장단과 이택순 경찰청장 일행이 환담을 하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지난 3월 31일

선배 조직인 재향경우회를 방문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한강택 차장, 정봉채 경무기획국장

과 함께 경우회에 도착, 구홍일 경우회

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의 뜨거운 환영

을 받는데 이어 선·후배간의 정다운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그간 업무

에 바쁘다 보니 이제야 선배님들을 찾

아 뵈게 되었다』면서 재직기간 동안

경찰발전과 선·현직 유대강화에 주력

할 뜻을 밝혔고, 구 회장은 『바쁘신

중에 잊지 않고 방문해 줘서 감사하

며,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 드린다』며

『일 잘하는 청장이 와서 기대가 큰 만

큼 앞으로 좋은 활동을 부탁 드린다』

고 화답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

는 경찰 60년사 편찬 작업이 선배님들

의 자료지원에 힘입어 내실있게 추진

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주문하는 한편 『앞으로 여건이 되면 매월 경찰청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나눔 음악회’에도 경우 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도 전·현직 120만 경우 조직의 위상정립과 조직발전을 위한 경우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직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 가운데, 이 청장은 『현직경찰과 경우회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 회장은 기흥 골프장 문제를 언급, 『기흥 골프장은 경우회만의 것이 아니라 현직을 포함한 전 경찰인들의 것이니 만큼 잘 지켜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이니 현직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약 40여분간 이어진 환담은 전 현직 지휘부들이 상호 관심사를 공유하고 끈끈한 정을 확인 함으로서 ‘영원한 경찰인’이라는 땀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회 내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적 통합을 꾀하는 일인데, 사회적 연대감이 약화되면 무질서가 발생하고, 방치된 무질서는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경찰은 사회구성원들을 공동체의 한 식구로 따뜻하게 보살피며, 갈등을 해소하는데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소외되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친구로서 사회통합의 선도자이자 폭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 대행은 『경찰은 그동안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개혁의 성과를 거둬오면서 인권의 식도 향상되었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대단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높아 졌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여러 강력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우수한 수사역량을 보여 주었다.』고 치하했다.

(2면으로 계속)

영국의 警·檢은 상호보완 협력 관계

— 박 현 호 (경찰대 교수, 영국 포츠머스대 경찰학 박사)

작년 12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시위 진압 도중 농민 두 명의 사망으로 인해 물러나게 되자 당시 경찰수사권 독립과 수사 서비스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하던 경찰 조직의 수장이 사라졌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지금은 이택순 신임 청장이 그 막중한 임무를 물려받아 혁신 추진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하였고, 보다 신중한 전략으로 내실있는 수사권 현실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영국에서 경찰학 박사과정 연구를 하면서 영국의 수사경찰관들과 직접 만나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나눈 적이 많았다. 종종 영국의 경찰과 경찰의 관계는 검찰 측의 선진 외국사례에 대한 엉뚱한 해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여 영국에서는 마치 1980년대 중반에 탄생하여 이제 겨우 20년에 불과한 역사를 가진 경찰이 경찰을 점차 장악하여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통제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영국 검찰조직의 업무를 규정된 ‘범죄기소법’ 어느 조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경찰이 경찰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명하복적으로 수사상 지휘를 한다거나

경찰에서 입건 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재차 신문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경찰에 의한 이중수사는 없다. 심지어는 폭행이나 강박에 의한 진술 등 자백에 의한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조차도 유죄판결당 경찰관에 의한 구금기록, 피의자를 진찰한 경찰공의(police surgeon)의 진료 기록 등을 참고 또는 검토할 뿐 담당 수사관이나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는 않는다.

범죄수추절차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경찰에 의해 시작되며 때로는 경찰이 입건을 통해 기소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국립기소청과 협의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립기소청 업무 혁신(Statutory Charging)을 통해 전국적으로 24시간 연중 무휴로 경찰에게 입건 관련 전화 조언 서비스(CPS Direct out-of-hours telephone service)를 실시하게 되어 경찰은 입건 송치 시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언제든지 전화로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검찰직무규정(Code 3조)에는 영국의 경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보완 및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립기소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사에 대한 법적 지침(CPS Relations with the Police)에서는 “검사가 경찰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줄에 있어서, 수사관의 역할을 하거나 경찰 수사 절차를 지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규정하고 있다(In giving advice to the police, you must not assume the role of investigator or direct police operational procedures).

나아가 최근에는 카운티 지역 단위에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입건 자문 서비스 수행이 검찰관과 경찰관서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한계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자 각 시, 버러, 디스트릭트 별로 경찰서 단위와 맞추어 지소를 설치하려고 각 경찰청과 협의를 거듭해 왔는데, 결국 범죄기소법 제3조와 검사 직무규정 Code3를 근거로 이루어진 1998년 ‘글라이드웨이 보고서’에 의해 경찰과 검찰 양 기관 간 기관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서 건물에 형사사법공조팀을 설치하여 경찰과의 범죄기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체류하던 햄프셔카운티의 포츠머스 시에서는 공판과 같은 한 개의 검찰청 독립 지소 사무소와 경찰서 내 합동 형사사법공조팀 사무소를 두고 범죄 기소 단계에서의 경찰과의



업무 중복 방지, 실무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업무 관계 개선, 시간적 지연 감축,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사법부의 신속화,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햄프셔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관 존 에쉬워스 경위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팀은 주로 포츠머스에서 활동하면서 강력범죄 수사를 하는데 범죄입건과 관련된 법률적 지문을 얻기 위해 경찰서 2층에 최근 마련된 형사사법공조팀의 검사에게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해 서로 자주 연락하는 편이다. 때로는 매우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찰서 공조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신중하게 토론을 한다. 이런 점들이 과거에 사무소를 서로 별도로 두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던 시절에 비해 수사와 입건서비스에 있어 많은 시간적 절약과 편의를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일부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근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경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주장은 큰 곡해임을 알 수 있다. 상호 관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영국과 같은 수평적 협력에 의한 대국민 수사서비스 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수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유감이다. 선진국에서는 수사상 권한을 ‘파워’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는 주로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과연 ‘수사’라는 것이 특권집단들의 전유물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봉사기능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때이다.

搜查權 문제 빠른 시일내 매듭

한덕수 총리 대행, 경찰대학 졸업식서 밝혀

경찰대학 제 22기 117명 졸업 및 임용식이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내외와 이택순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 내외귀빈, 가족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경찰간부로 입문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졸업식은 과거 절차위주의 의식 행사에서 벗어나 행사 전 과정에 걸쳐 교향악단의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연주와 첨단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졸업과 임용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 종합문화행사로 진행되어 참석자 모두가 하나되는 신명난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이자리에서 한 총리 대행은 『수사권 조정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



의 원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하겠다』면서 『경찰은 이에 대비해 더욱 더 과학수사와 인권 친화적 수사시스

템을 정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 대행은 『오늘날 요구되는 주요한 경찰기능 중의 하나는 사

搜查權 調整은 國民의 與望입니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시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方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건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영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시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에 이를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